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사유

- 가. 2005. 7. 1부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에 중복조항을 삭제하고
- 나.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 일부조정등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현행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과 중복조항 삭제
 - 근무시간(제13조 내지 제16조2),연가일수(제18조),점직허가(제26조),정치적 행위(제27조)를 삭제함
- 나. 특별휴가의 조정(안 제23조)
 - 공무원의 특별휴가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 휴가를 무급으로하고
 -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일부 축소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 나. 입법예고 : 2005. 10. 31~11. 19(별도의견 없음)
- 다. 기 타 : 조례표준안 시달
(행자부 지방공무원 제도팀 - 1619, 2005. 7. 15)

4. 검토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2005. 6. 30일부로 「지방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과 복무규정과 중복된 사항, 그리고 본조례의 편제상 잘못된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 개정된 대통령령이 대부분 근무시간, 연가일수 등으로 이에 맞춰 개정코자 하였으나, 관련조항들이 대통령령과 중복되므로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하고 대신 제27조의 2를 신설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못한 것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토록하므로 조례를 간단명료화 하였는데,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근무시간에 관한 조항(제13조-16조의 2), 연가일수 관련조항(제18조) 전부 삭제

- 겸직허가(제26조) 정치적 행위(제27조)삭제

- 제23조 특별휴가 조항중

- 특별휴가중 생리로 인한 여성 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
-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 휴가를 폐지 - 이하 부산광역시조례안
- 경조사 휴가중 자녀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결혼식, 회갑 및 탈상과 관련된 모든 휴가를 폐지하고 가족사망시 휴가일수를 약간 조정하였음(별표3참조)

○ 검토결과 제27조의 2 신설조항이 삭제되는 제27조 정치적 행위조항과 연계되는 부분이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원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여타 개정된 부분은 대통령령과 부산광역시 조례와 일치시킨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도 좋을 것으로 사료됨.

2005. 12.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윤 병 성